

성동구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안 번호	1547
----------	------

제출연월일: 2021. 2. .
제 출 자: 성동구청장

1. 제안이유

성동구청년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공백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운영 지속을 위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1) 대상시설

구분	시설명	소재지	규모(명, m ²)		현 위탁체	계약만료일
			종사자	연면적		
재계약	성동구청년 지원센터	성동구 왕십리로 287, 2층(행당1동)	3	99	성동청년 플랫폼	2021.03.31.

2) 위탁기간: 계약만료 익일부터 3년

3) 위탁운영체 선정

(가) 민간위탁운영위원회 구성

- 근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22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 인원: 5명 이내(위원장 포함)

(나) 재계약: 현 위탁운영체의 적격 여부 심의

나. 주요 위탁내용

- 1) 청년교류활동 공간제공 및 활성화
- 2) 청년지원센터 시설 관리·프로그램 운영
- 3) 청년 역량개발사업 기획·운영 및 교육 등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22조제3항(청년시설의 설치·운영)
-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1) 지역청년을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과 청년 주도의 사회문제 해결 등 청년활동 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와의 협업 필요
- 2) 지역청년 단체(모임) 네트워크 활동 지원을 위한 거점으로써 청년지원센터의 활성화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22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나. 예산조치

- 운영예산: 170,887천 원(구비)
- 세부내역: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 예산확보: 2021년 본예산 기 확보

[참고법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22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지원정책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구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시설관리 사무 등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성동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성동구의회 동의를 갈음한다.